

맥쿼리자산운용의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 관리 주요 내용

본 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이하 “ 법”)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맥쿼리자산운용의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1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

-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-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(단 차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아래 박스 참조)

*차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

-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
-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
-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
-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 (제6조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통제 총괄·집행 책임자 역할을 담당)의 승인을 받은 정보

-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(단 차단 대상

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아래 박스 참조)

*차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

- 회사의 집합투자업 등을 수행하는 부서(후선 및 지원 업무를 제공하는 부서를 포함한다)의 소속 임직원* 간의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업무상 교류 정보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외의 정보

*주) 맥쿼리그룹 Information barrier and Confidentiality Policy에 따르면 회사의 임직원은 모두 동일한 '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'인 MAM Real Assets사업부문 information barrier에 속하며 MAM 외의 다른 사업부문과는 information barrier가 적용됨.

-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
-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

2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대한 관리 정책

2.1. 정보교류차단의 일반 원칙

① 회사는 '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'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'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'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.

③ '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'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'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'를 해당 권한이 없는 임직원 및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④ 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‘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’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‘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’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취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‘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’에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⑥ 준법감시인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
2.2 정보교류차단 관리 절차

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,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‘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·운영한다.

1. 별도 업무 공간 지정 또는 사무 공간의 분리
2. 문서, 폴더,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
3.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·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·운영

2.3. 예외적 교류의 방법

① ‘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.

1. ‘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’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(해당 업무 담당 부서 소속 임직원, 후선 및 지원 업무 부서 소속 임직원, 직무상 관리, 감독 책임이 있는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)

2.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(‘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’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·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)을 받을 것 (‘Type B’ 거래의 경우 insider list를 설정하면 이를 이 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)
 3. 제공하는 ‘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’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
 4. ‘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’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
 5. 본 조에 따라 ‘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’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의무 및 제한사항 (비밀유지, 정보보안 의무, 부당 정보이용 금지, 선행매매 금지 등)을 준수할 것
- ② 준법감시인은 ‘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’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해당 의무 및 제한사항 준수 확인으로서 Information Protocols 를 시행할 수 있다.

3. 상시 감시 체계

3.1.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·운영

회사는 ‘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’의 식별 및 설정, 제9조에 따른 예외적 교류 승인 절차의 적정성 감독, 그 외 이해상충 방지 등 정보교류의 차단 및 이해상충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‘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’을 둔다.

3.2. 거래주의 목록 및 거래제한 목록 관리

- ① 회사의 집합투자업 등 영위와 관련하여 자산 취득, 매각 등 거래 업무

진행시 거래로 인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및 이해상충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 및 업무상대방에 대한 이해상충체크 (Conflicts Check) 절차를 거쳐야 한다. 평가 결과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및/또는 이해상충 우려 거래로 지정하고 해당 법인과 관련한 주식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목록 (Watch List) 및/또는 거래제한 목록(Restricted List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준법감시인은 거래주의 목록 (Watch List) 및 거래제한 목록(Restricted List)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 및 임직원에 의한 매매가 제한되도록 회사 및 임직원의 매매거래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(시스템을 통한 경우 포함),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,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4. 이해상충 우려 거래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, 이해상충 우려가있는 거래의 유형에 대하여 맥쿼리그룹규정인 Conflicts of interest policy를 참조한다. 그 중 이해관계인거래(Related Party Transaction)에 대해서는 법 제84조(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) 등 관련 법령 및 관련 내규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.

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단념,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, 회사 및 임직원의 해당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